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7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역할에 더하여 달라지는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용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추진배경 : 국민주택기금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주요내용
 - 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② 도시재생사업에 재정 보조 뿐 아니라, 기금의 금융지원 가능
 - ③ 전문성 있는 기금 전담 운영기관 지정
- 시행일 : 2015.07.01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5.1.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합니다.
- 본 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 수록 우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7 (1.7)	2.8 (1.8)
2천 초과~4천만원 이하	2.9 (1.9)	3.0 (2.0)	3.1 (2.1)
4천 초과~5천만원 이하	3.1	3.2	3.3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가 소득(최저생계비 2배 이내), 부동산, 자동차 소유 등을 엄격히 따져 추천하던 2.0% 금리의 기존 저소득가구 추천 제도는 폐지

- 이번 조치로 지역별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전세자금 대출계층에 주거 상향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추진배경 :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년 1. 2일부터 전격 시행

■ 주요내용

- ①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는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 ② 금리를 2.7~3.3%으로 보증금별, 소득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 우대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 우대금리

■ 시행일 : 2015.01.02

■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포털 또는 기금취급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12.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 정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5.1.2일부터 최초로 실시합니다.

- (대상)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 가입자, ③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고액월세자 제외 :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 정부는 이번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4.12.22부터 **우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의 확산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해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15년 한시로 주택기금 월세대출을 시범 실시
- 주요내용
 - 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월세대출 상품 출시
 - ② 2.0% 저금리로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대상
 - ③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시행일 : 2015.01.02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15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 현 주택시장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면서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 청약제도는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개편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9·1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
 - 주요내용
 - 〈'15. 3월 이전 시행예정〉
 -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15. 7.1 시행예정〉
 - ⑥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 주택법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추진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15년 3월 중 시행됩니다.

-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 사망·중증장애로 생활이 불안정하기 쉬운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도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파독 간호사·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 시행일 : 2015. 3월 시행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될 예정입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됩니다.
 -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이 완화**(4층→5층) 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완화

- **추진배경**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 ②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③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 완화
 - **시행일** : 2014년 3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 다만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7월까지 개정 예정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4년 4인가구 기준 월 173만원
 - 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

2015년도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 주요내용
 - ① 수급대상 확대 : 70만(14년) → 97만 가구(15년)
 - ② 월평균 급여액 증가 : 9만(14년) → 11만원(15년)
- 시행일 : 2015년 6월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59)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합니다.
-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사업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

-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역할을 확대하고 공적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전환하고 기능을 개편 필요
- 주요내용 :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조정
- 시행일 : 2015. 6. 4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 044-201-3473)

- '15.6.4부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사전에 등록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공간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공간정보의 검색, 구매(유료정보의 경우), 내려받기(Download)는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www.nsic.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 범위확대

- 추진배경 :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 주요내용
 - ① 공간정보 제공대상을 '공간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 확대(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개정)
 - ②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6)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고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이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60% 증가한다

2015년도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추진배경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 휴업보상분의 20%(1천만원 상한)
 -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5백만 원 → 6백만 원
- 시행일 : 2014년 10월 22일(최초로 보상계획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보상전문기관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6)

-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2015년도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추진배경 :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한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보상전문기관 확대 : 현행 8개(LH공사 등) →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 시행일 : 2014년 12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3)

■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금액	요율	금액	요율	
매매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이하	
			9억원 이상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이하	
			6억원 이상	0.8%이내 협의	

-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구분	현행 요율	변경요율		비고
	오피스텔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그 외 오피스텔	
매매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0.5%이하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개선

- 추진배경 :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 확산
- 주요내용
 - ①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요율 신설
 - ②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신설
- 시행일
 - ① 주택의 중개보수는 각 시·도별 조례 개정 중(잠정 '15.2~6월 공포 예정)
 - ②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중(잠정 '14.12월~'15.1월 공포 예정)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임

-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확대 (7개→14개),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등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공포 시행('14.12월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2015년도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 부담완화

■ 추진배경 :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①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등 타 부담금 비용인정 확대 (7→14개),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 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기술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인력정보 부족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 디비(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하였습니다.

* 경력관리기관(6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경력 디비(DB):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89년부터 건설기술자(약70만 명)의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신고받아 관리중인 자료로 약2억 개 정보 축적

■ 기존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건설관련 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건설관련업체 정보와 **건설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으나,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는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디비(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디비(DB)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 추진배경 : 건설경기 침체로 기술인력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에서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구인난이 발생.
구인·구직 매칭지원을 통하여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설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기술자 경력단절 및 실업 등을 해소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보유한 건설기술자의 정보(약 2억개)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시행일 : 2014년 11월 28일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7)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불필요한 장비보유기준(비디오카메라)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시설물 점검주기 확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불필요한 진입규제 완화
- 주요내용
 - ① 취약시설물(D,E급) 정기점검 시기 변경(반기 1회 이상→1년 3회 이상)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중급기술자 중 ‘기사’ 자격 삭제)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비디오카메라’ 삭제)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용·복합개발 촉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됩니다.
 -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을 완화합니다.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참고자료>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용·복합 개발 가능해진다.

2015년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의 용·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공간 조성, 노후화된 기성시가지 정비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지정대상) 도시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노후·쇠퇴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공업지역 등
 - ② (지정기준)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등
 - ③ (완화내용)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 ④ (지정절차)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 →국토부에 결정 신청 → 관계기관협의 → 중도위심의 → 국토부결정('1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12.9 국회 본회의 통과)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기반시설에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이 한 시설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의 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편익시설로 복합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14.12월부터 규칙이 개정되어 기반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시설 활성화
- 주요내용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확대
- 시행일 : 2014년 12월(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56)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분양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미분양 면적에 관계없이 추가 공개모집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같이 중심선치수*에서 안목치수**로 일원화됩니다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건물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도 분양건축물 제도 개선사항

■ 추진배경 :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20호실이상→30호실 이상)
-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 완화(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최초 공개모집후 수의계약 가능)
- ③ 오피스텔 분양계약서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중심선치수→ 안목치수)

■ 시행일 : 2014년 12월 3일 시행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우수건축자산을 적극 보전·활용함과 동시에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적 유산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건축자산들이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의 완화 적용 등을 통해 적극 보전·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밖에 한옥과 관련 하여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적용 기준을 수립하여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특례적용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확정해 오는 6월 동법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한옥등건축자산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자산 진흥을 통한 국가건축문화 진흥
- 주요내용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계법령의 특례적용
 - ③ 한옥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시행일 : 2015.6.5(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중 '14.12.26~)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3)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OEM부품)을 대부분 사용하여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 2015년 1월 8일부터는 보다 저렴한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을 통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대체부품 인증제도

- 추진배경 :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4.1)
- 주요내용
 - ①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체부품에 대해 성능·품질 인증
 -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하여 판매
- 시행일 : 2015년 1월 8일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임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8)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임무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물 의무보험**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이번 보상한도 인상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0년만에 1.5배 확대

2016년도 책임보험 및 대물임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개요

- 추진배경 : 보상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①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사망·후유장애시 1억원→1억5천만원, 부상시 2천만원→3천만원)
 - ② 대물임무보험 보상한도 인상(1천만원→2천만원)
- 시행일 : 2016년 4월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15. 1. 8부터 의무화 됩니다.
-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하여 공개한 표준정비시간을 인쇄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 정비항목에 대하여는 게시물을 붙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정비의뢰자가 정비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작업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제작사, 차종, 정비도구, 사용연료 등에 따라 실제정비시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추진배경 :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도록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 ② 주요정비작업 외에는 홈페이지 게시 및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
- 시행일 : '15.1.8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6)

-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는 '14.10.18부터 1단계로 일부 제한적 운영* 중이며 '15년 1/4분기 중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공항여객터미널 동쪽 Fast Track, 오전8시~10시
 - 전용출국통로 이용으로 출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 **교통약자의 권익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 사회적 기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시범운영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 추진배경 : **교통약자·사회적 기여자** 등에 대한 **공항이용 편의 증진**
- 이용대상
 - ① (교통약자) 만6세 이하, 만80세 이상, 임산부, 보행 장애인 등
 - ② (사회적 기여자)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자
- 시행일 : 2015년 1/4분기(잠정, 관련기관 인력 증원을 위한 절차 진행중)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건물이나 굴뚝, 첩탑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을 위하여 60m 이상 구조물중 특수구조물(첩탑, 굴뚝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설치신서를 제출할 수 있게됩니다.
- *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 경상, 전남, 제주, 울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 추진배경 :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신고자의 불편 제거
- 주요내용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매우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 항공등화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어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15년 1월 1일부터는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 추진배경 : 공항운영자의 유지보수인력 운용효율 증대
- 주요내용
 - ①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를 자격조건을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에서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 실무경력으로 완화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표시등 설치신고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 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섬광등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5년 1월 1일부터는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험성적기관의 표시등 시험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섬광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 추진배경 :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의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하는 성능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섬광등에 대하여는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도로변 규제 풀니 '여의도 18배' 땅이 이용 가능!”
접도구역 폭 축소(20→10m), 지정제외 확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0

-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한 토지가 도로변 관련 규제(접도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B씨는 사는 집을 넓히려 했지만 역시나 관련 규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중·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도구역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접도구역 지정목적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 시행일
 - ① 2014년 12월(법령개정)
 - ② 2015년 6월[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국도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3),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61)

-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 수단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져 보급에 애로가 있었는데
 - 경찰청에서는 하이숍에서 양도·양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시행하고, 자동차판매업소, 부품업소, 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 이에 따라, '15.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 추진배경 : 불꽃신호기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나, 양도·양수 시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에 애로

■ 주요내용

- ① 경찰청 지침을 변경하여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14.10)하고, 하이숍에서 판매 추진('15.1월말)
- ② 하이숍 외에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행일

- ① 2015년 1월(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 추진)
- ② 2015년 10월(잠정, 개정안('14.10.31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14.10.31 입법발의(김성태 의원)하여 국회 계류 중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898)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MRG(최소운영 수입보장)를 폐지합니다.
 -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3,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였으나,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을 통하여 2,7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 감소 예정
 -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행료 인상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인상폭도 최대 7.37%(연평균 2.4%)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15~'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MRG를 폐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을 완전 제거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소요액 미지급에 따라 5.2억원 재정 절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2)

-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 (‘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참고1)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처하면 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1.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주택건설자금 및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국한되던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 민간자금을 임대주택·도시재생사업에 유치하기 위하여 단순 용자 외 출자, 투·용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 (전담 운영기관) 자금관리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p>주택도시기금법 (2015.07.01)</p> <p>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p>
2. 통합 전세상품(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연 3.3%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8년 가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연 2.0% : 지자체장 추천(최저생계비 2배 이내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한도 등 :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팀목 전세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연 2.7~3%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 우대)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10년 가능 <p><small>☞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small></p>	<p>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p> <p>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p>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p>〈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①취업준비생, 	<p>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②희망키움통장(I, 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 (금리)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보증 등) 월세 미반환 위험회피를 위하여 월세대출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적은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금리우대(0.2%p)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4. 주택 청약제도 전면개편	①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 대주) 완화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급	○ 세대주 요건을 폐지(세대원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세대주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청약허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 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은 1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 (총 13단계) *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 2순위 : 6개월, 6회 이상 - 민영주택(85㎡ 이하)	* 1순위 :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추첨제 - 민영(85㎡ 이하)은 1순위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2순위 추첨제 (민영 85㎡ 초과는 1순위 및 2순위 모두 추첨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은 1순위 청약자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다시 2순위 청약자 중 가점 및 추첨제, 이후 3순위 추첨 (총 5단계)</p> <p>* 민영주택 85㎡초과는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100% 추첨</p>		
[3]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 기간 등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는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규모 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하여 즉시 청약 허용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 허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4]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받고 있으나, 유주택자(2주택 이상)는 이외는 별도로 감점(1채당 5~10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5]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 및 배우자가 일정한 기준의 소형·저가주택(전용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1채)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집값 편차 등을 고려하여,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완화(전용 60㎡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3억, 지방 8천만원 이하 1채)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적용 대상을 세대구성원 전체로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6]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유형 4개(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형 단순화	약부금, 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기 가입 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 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공급주택 유형 3개(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 유형을 2개로 통합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5. 파독 근로자 체육유공 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①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 신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간 한시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② 대한민국 체육유공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신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6.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임대유기기간 : 10년 - 별도 조례로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 - 연립 · 다세대 주택 의 경우 4층으로 층 수가 제한	- 임대유기기간 : 8년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연립 · 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 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 한 완화 <small>☞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 책 발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small>	임대주택법 ('15.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15년. 7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기획과 (044-201-3355, 3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70만 가구 ○ (월평균급여) 9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97만 가구 ○ (월평균급여) 11만원 <p>※(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15. 6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8.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대한지적공사 ○ 업무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4.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5.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6. 그 밖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 ○ 업무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5.6.4)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등록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정보 제공대상을 '공간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자'로 확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15. 6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3)		
10. 공익 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시 영업손실 보상등 확대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월 이내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월 이내 보상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휴업보상분의 20%, 1천만원 상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약 60%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②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약 60% 확대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0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1. 보상전문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공사 등 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개선	① 매매 6억~9억, 임대차 3~6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 신설	매매/임대차 0.9%/0.8% 이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 매매 6~9억 구간 요율 0.5% 이하 ○ 임대차 3~6억 구간 요율 0.4% 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시·도 조례 (‘15.2~6월예정) 각 시·도 토지관리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② 85㎡ 이하 일정설비 (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의	○ 매매 0.5%,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13.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개발사업 구역내의 진 입로 공사비만 인정 ○ 7개 부담금만 개발비 용 인정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초지조성비, 수도원인 자부담금, 하수도 원인 자 부담금, 광역교통시 설부담금 등)	○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 개발사업 구역외의 진입로 개설비용을 공사비로 인정 ○ 7개 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 으로 인정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구 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 용부과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 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생 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 보 전협력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15.1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 34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및설계 등을 위해 사전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수반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등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14.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온라인 포털의 구인·구직 기능은 단순 공지나 입사지원 정도로 국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별로 별도 구인·구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협회별로 운영중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건설워크넷”으로 통합 건설분야 일자리를 한눈에 확인 가능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14.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인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15. 취약 시설물의	① 취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 1회 이상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받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대 조정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물 정기점검 실시시기 확대		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 중급기술자 ‘기사’ 자 격 제한	○ ‘기사’자격 삭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	○ ‘비디오카메라’ 보유	○ ‘비디오카메라’ 삭제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16. 입지규제최소구역 통한 도시내 용·복합 개발 촉진		○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허용용도, 밀도(건폐 율, 용적률) 등 건축제 한 적용	○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일률적인 용 도지역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 역맞춤형 도시계획 허용 -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주거· 산업·사회문화·관광·업무판 매 등 3개 이상 중심기능을 포 함한 계획수립 - 구역내 계획을 통하여 용도, 건 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입지규 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1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17. 도시계획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 공공청사, 학교, 문 화·체육시설의 편익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의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편의시설 확대	시설 -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구내매점 등 ○ 자동차정류장 편의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마을회관), 제2종 근생시설(극장 등,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등),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어린이회관 ○ 자동차정류장 편의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4.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18.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① 분양 오피스텔 분양 신고 기준 완화	○ 20호실 이상 ○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완화	○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③ 분양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	○ 중심선 치수 ○ 안목치수 적용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19. 자동차 대체부품인증 시행	○ 없음	○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14.12) 국토교통부자동차 운영과 (044-201-3853)
20.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사망·후유장애시 최 대 1억원, 부상시 2천 만원, 대물피해시 1천 만원	○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5천 만원, 부상시 3천만원, 대물피해 시 2천만원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0년 만에 1.5배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16. 4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8)
21.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신규	○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 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1.8)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 3840)
22.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 1단계 운영 (동편 전용출국통로, 오전 8~10시)	○ 2단계 확대 운영 (동·서편 전용출국통로, 7~20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 로 시범운영	’15. 1/4분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6)
2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 우편이나 메일 등을 통하여 항공장애 표시 등 설치 신고서를 제 출	○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장애 표시 등 설치신고서를 제출가능	항공법 시행령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4.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공등화시	○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 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	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	점검지침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5.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성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 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성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섬광등의 경우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15. 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6. 접도구역 규제 완화	고속도로의 접도 구역 폭 20m 군도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접도구역 지정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도로법 ('14.12월)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27.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양도·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목적 불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 관련 법령 개정 후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로운 판매 가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5.10월) 국토교통부 침단도로환경과 (044-201-3933)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8. 서수원 -평택 민자고속 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① 통행료 인하	○ 1000원 ~ 3,100원	○ 900원 ~ 2,700원
	② 통행료 인상 주기	○ 매년	○ 3년(7.37%, 연평균 2.4%로 제한)
③ MRG	○ 적용	○ 폐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29. 긴급견인	○ 민자구간 미적용	○ 적용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2)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무료긴급견인서비스,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기상청			
1.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인력기준 2명	○ 기상인력기준 1명	기상산업 진흥법
			기상산업 정책과
2. 기상용 슈퍼컴퓨터 신규 도입	○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 슈퍼컴퓨터 3호기, 4호기(우리) 운영 ○ 세계기상분야 슈퍼컴퓨팅 성능 향상 - 758TF → 1,205TF(2014년 8위 → 5위) ☞ (참고)기상청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043-711-0230)